

“라임보다 더 악질” 옵티머스 배상 어떻게?

# 운용사의 사기, 판매사 책임 묻기 힘들어 VS NH·옵티머스 커넥션 밝혀지면 전액 보상

라임펀드의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100% 배상해야 한다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 권고가 나오면서 옵티머스 투자자들도 100% 배상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다만 과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옵티머스펀드는 라임펀드와 상황이 조금 다르다. NH투자증권이 매출채권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쳤음에도 사기를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어서다. 결국 NH투자증권이 부실 정황을 알고서도 판매를 지속한 증거를 찾아내는 게 관건이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규모가 1000억원을 넘어섰다. 이날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펀드 제29호, 제30호 가입자에게 “현재 정상적 펀드 상황이 어려워 부득이 만기 상황이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 ◆환매 중단 규모 ‘눈덩이’

지난 18일 환매가 중단된 25, 26호, 옵티머스 헤르메스 1호, 23일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27, 28호를 포함한 환매 중단 규모는 1056억원이다. 오는 16일, 21일에 만기가 돌아오는 펀드도 있는 만

5등급 상품으로 녹취 기록 없어 불완전판매 증명할 증거 찾아야 증명해도 100% 반환 난항 전망

금 환매 중단 규모는 계속해서 커질 전망이다.

이 가운데 투자자들은 라임무역금융펀드와 같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통해 100% 보상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소비자가 펀드에 가입하기로 계약한 시점에 펀드의 상황 등에 대해 잘못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즉, 라임자산운용은 투자 제안서에 핵심정보를 속여서 기재했고, 판매사는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소비자는 속아서 펀드에 가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옵티머스 펀드도 마찬가지다. 공공기관 매출 채권 위주로 투자한다고 제안서에 적었지만 실제 펀드 운용 초기부터 공공기관이 아닌 부동산 개발, 대부업체 등에 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옵티머스펀드는 라임과 구조



펀드 운용사인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연합뉴스

가 조금 다르다. 라임자산운용이 부실 전환사채(CB)를 편입했고, 그 과정에서 판매사가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착오’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옵티머스펀드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펀드명세서에 공공기관 매출채권이라고 작성했다. NH투자증권은 예탁결제원이 작성한 펀드명세서를 믿고, 확인했기 때문에 검증 과정이 미흡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옵티머스 사태는 라임보다 악질적인 사건이다”면서 “자산운용사가 마음먹고 사기를 쳤기 때문에 판매사에게 100% 책임을 묻기

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불완전판매 증명 어렵다”

불완전판매를 증명하는 것도 힘들다. 옵티머스펀드는 위험등급이 5등급인 상품으로 판매 당시 녹취 의무가 없다. 일부 유선 상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다”는 등 불완전판매의 의혹이 나왔지만 실제로 계약서에 싸인하는 시점에서 설명이 주요한 근거가 된다고 법무법인 측은 설명한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투자자가 펀드 가입 시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등 관련 항목에 체크를 했다면 불완전 판매가 인정되기

어렵다”면서 “자필로 체크를 하고 서명을 했다면 결국 투자자가 불완전판매를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전례를 볼 때 불완전판매가 인정돼도 보상규모는 낮은 수준에서 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100% 보상은 검찰 조사 등을 통해 과연 NH투자증권이 운용사의 부실 정황을 알고서도 판매를 지속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4528억원 어치를 판매했다. 전체 판매의 85.86%에 달하는 수준이다. 한 증권사가 단일 운용사의 사모펀드를 몰아주기식으로 판매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지난 30일 옵티머스 이사 겸 H법무법인 대표인 윤모 변호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옵티머스대표인 김모씨, 펀드운용 이사 송모씨 등을 조사한 상태다. 검찰은 옵티머스의 불법적인 펀드 운용 내용에 국한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앞으로 정관계 유착 의혹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NH투자증권과 옵티머스 간 연관 고리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아니라면 NH투자증권도 사기범죄의 피해자로 판단될 수 있다”면서 “다만 라임과 신한금융투자처럼 사전에 문제점을 인지한 채 상품을 판매를 했다면 판매사로서 100% 배상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 “라임 영향, 디스커버리 배상 비율 높아지나?” 촉각

기업은행, 투자금 50% 선지급 투자자 계약 무효, 원금보상 요구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펀드에 대한 100% 손실배상 권고를 내리자 디스커버리 자산운용펀드도 배상비율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펀드에 대한 불완전판매를 조사하고 있다.

기업은행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판매한 디스커버리자산운용펀드는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다.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펀드는 미국의 DLI운용사가 실제 수익률 등을 허위로 보고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현재 기업은행이 판매한 금액은 각각 3612억원, 3180억원이다. 이 가운데 914억원이 환매 지연됐다.

### ◆투자자 “기업은행 DLI운용사 문제 충분히 인지…”

투자자들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펀드가 불완전 판매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입 당시 투자자정보를 파악하고 투자자 성향 분석 등을 진행하는 절차가 없었고, PB상품에 맞게 투자자의 성향을 조작했다는 것. 기업은행이 펀드 투자권유 준칙을 어겼다는 주장이다.

펀드투자권유 준칙 8조3항에 따르면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으로부터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뒤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 그러나 투자자 측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임직원은 투자자 정



기업은행 본점. /연합뉴스

보와 성향에 대한 분석보다 가입을 위한 자필기재를 우선 요구했다.

투자자 A씨는 “대부분은 이러한 투자성향을 분석하는 과정 없이 가입이 진행됐다”며 “가입자 대부분이 항목에 체크하지 않았는데도 상품에 맞춰 투자 성향이 기재돼 있었다”고 했다.

또한 투자자들은 상품마다 투자자 성향이 다르게 기재돼 가입됐다고 주장한다. 펀드투자권유 준칙 9조 1항을 보면 임직원은 투자자로부터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최대 12개월(당해 연도 분석 분에 한함) ‘기본투자성향’은 변경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또 금번 투자자금 성격은 유효기간 없이 권유 시마다 정보를 새로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투자자가 제시한 투자정보확인서를 보면 안정추구형(5등급) 가입자가 공격투자형(1등급)에 가입돼 있거나 상품에 따라 투자성향이 적극투자형(3등급)에서 공격투자형(1등급)으로 달

라진 경우도 있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날부터 최대 1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기본투자성향’은 변경될 수 있다”면서도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투자자정보를 다시 파악해야하고, 상품과 투자자성향이 다를 경우 권유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펀드 계약을 무효 처리하고 100% 원금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최장석 디스커버리펀드 피해대책위원장은 “이번 금감원의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대한 100% 배상결정은 판매사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는 것으로 본 사례”라며 “기업은행도 펀드를 판매할 당시 DLI운용사의 문제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만큼 100% 원금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 ◆기업은행 “분조위 결과 지켜보아”

다만 기업은행 측은 지난달 이사회에

서 결의된 방안을 우선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 달 11일 이사회를 통해 투자금의 50%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투자자가 기업은행과 개별사적 화해계약을 통해 가지급금을 우선 받은 뒤 나중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최종 보상액과 환매 중단된 펀드의 최종 회수액이 결정되면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현재 기업은행은펀드를 판매한 영업점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50%를 선지급한다는 동의서를 받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투자금의 50%를 투자자에게 선지급하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차액을 더 지급하거나, (배상비율이 낮을 경우) 투자자로부터 지급액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와 관계없이 50% 선지급은 기업은행이 고객을 위해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친 만큼 지급 비율 등을 수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만약 기업은행의 선지급 대안과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 소송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선지급에 이어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소송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며 “최대한 합리적으로 해결하되 고객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분쟁조정 절차도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코로나19 직격탄 ELS 발행·상환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주요증시가 폭락하면서 파생결합증권(ELS, DLS) 발행액과 상환액이 직전분기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분기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은 26.3조원으로 직전분기(42조원)보다 37.4% 감소했고, 상환액은 27.5조원으로 직전분기(44.1조원)보다 37.6% 하락했다.

특히 1분기 중 ELS 발행액은 21조원으로 전년 동기(19.8조원) 대비 6.1% 증가했으나 직전 분기(34.3조원) 대비 38.8% 감소했다. 직전 분기 대비 큰 폭 감소는 퇴직연금의 원금보장형 ELS 편입에 따른 발행(14.5조원)이 전년 12월 중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3월 중 코로나19로 글로벌 주요증시가 폭락하면서 원금비보장형 ELS를 중심으로 발행액이 크게 감소했다. 원금비보장형 ELS 발행액은 ▲2020년 1월 6.8조원 ▲2월 7조원 ▲3월 3.9조원 순이다.

이번 1분기 중 ELS 상환액은 19.1조원으로 전년 동기(17.7조원) 대비 7.9% 증가했으나, 직전 분기(34.9조원) 대비 45.3% 폭락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증시가 동반 폭락해 조기상환 규모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조기상환 규모는 ▲2020년 1월 8.4조원 ▲2월 5.9조원 ▲3월 2.3조원 순으로 감소했다.

/박미경 기자 miyoung96@